

# 임금피크제 운영기준

[시행 2015.7.31.] [기준 제38호, 2015.7.31., 제정]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기준은 「인사규정」 제40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인사, 보수, 퇴직금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조정연봉”이란 임금피크제 적용일이 속하는 연도의 「직원성과연봉제규정」에 따른 기본연봉, 성과연봉에 임금피크제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.
2. “별도직군”이란 「직제규정」에서 정하고 있는 직군 이외의 직군을 말한다.

**제3조(대상)** 임금피크제 대상은 종합직 및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한다.

**제4조(적용일)** 임금피크제 적용일은 만 59세에 도달한 달이 속한 분기말의 다음날로 한다.

## 제2장 인사관리

**제5조(직군분류)**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은 별도직군으로 분류하고 별도정원으로 관리하되, 세부수행직무 및 직위 등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6조(성과평가)**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성과평가 방법 및 등급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7조(출장비)**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출장비는 「여비규정」에 따라 지급하되,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직위를 기준으로 지급한다.

## 제3장 보수 및 복리후생

**제8조(연봉조정 및 보수)** ①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연봉은 적용일부터 조정연봉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지급률 및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다.

1. 지급률 : 60%
2. 적용기간 : 만 59세에 도달한 달이 속하는 분기말의 다음날로부터 「인사규정」 제

40조에 따른 정년 퇴직일까지

② 제1항에 따른 지급률로 조정된 기본연봉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하고, 성과연봉은 제 6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.

③ 임금피크제 적용일 직전까지 보직을 유지할 경우 해당 직무급은 포함하여 조정연봉을 계산한다.

**제9조(퇴직금 중간정산)** 임금피크제 적용 예정인 직원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다.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「근로기준법」 및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에 따른다.

**제10조(복리후생)**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직급 및 직위를 기준으로 한다.

## 제4장 기 타

**제11조(준용)**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인사, 복무, 보수,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내 규 및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칙 <기준 제38호, 2015.7.31.>

이 기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